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과징금 부과기준이 불법배출이익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되는 등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6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매출액 범주, 위반횟수 등에 따른 기준부과율 및 자진 신고시 감면 기준 신설(안 제3조)

나. 과징금 부과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징금심의위원회 설치(안 제4조)

다. 과징금 부과권한을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안 제7조 및 제17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부처협의(2019.12.24.~2020.1.3.)결과 의견제출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비대상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불법배출이익의 산정방법)”을 “(위반부과금액의 산정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반부과금액(이하 “위반부과금액”이라 한다)을 산정할 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산상황이나 그 밖에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위반부과금액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과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 불법행위를 환경부에 최초로 신고하고 시정한 자로서 관련 증거를 제공한 경우에는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2. 환경부가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환경부에 자진 신고하고 시정한 자로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는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④ 제3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 제목 “(가중치의 산정방법)”을 “(과징금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과징금 부과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과징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 ④ 위원은 법률 또는 환경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와 4급 이상 환경부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 ⑦ 심의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⑨ 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⑩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제7조(정화비용의 사용) ① 환경부장관은 정화비용으로 징수한 금액 전액을 그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 장관은 정화비용으로 징수한 금액을 오염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 소속기관에게 지급하여 그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환경법위반행위”를 각각 “법 제15조의2제1항의 위반행위”로 한다.

1. 법 제15조의2제1항의 위반행위 감시·단속

제1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업장”을 “행정처분을 위한 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받은”을 “받아야 하는 자,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수입·판매 또는 같은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반부과금액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위반부과금액은 매출액에 다음과 같이 구분된 기준부과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구분	기준부과율	
	1회 위반	2회 이상 위반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이내에 해당하는 자	1천분의 25	1천분의 50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는 자	1천분의 30	1천분의 50

비고1) 중소기업 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비고2) 위반 횟수는 적발일부터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비고3) 법 제12조제2항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은 위반행위 적발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적발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2조(과징금 부과대상 오염물질)</u> <u>「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u> <u>1. 법 제2조제2호가목의 경우:</u> <u>다음 각 목의 물질</u> <u>가. 불소화합물</u> <u>나. 염화수소</u> <u>다. 염소</u> <u>라. 시안화수소</u> <u>2. 법 제2조제2호나목의 경우</u> <u>(「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음 각 목의 물질</u> <u>가. 페놀류</u> <u>나. 시안화합물</u> <u>다. 구리 및 그 화합물</u> <u>라. 카드뮴 및 그 화합물</u> <u>마. 수은 및 그 화합물</u> <u>바. 유기인화합물</u>	<u><삭 제></u>

사. 비소 및 그 화합물

아. 납 및 그 화합물

자. 6가 크롬 화합물

차.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
닐

카. 트리클로로에틸렌

타.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 법 제2조제2호나목(「물환경
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마목까
지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
물

4. 법 제2조제2호바목의 경우:
「하수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오수 및 분뇨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
른 가축분뇨 중 각각 생물화
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
천500밀리그램 이상인 오수·
분뇨 및 가축분뇨

5. 법 제2조제2호아목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
호·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
금지물질

제3조(불법배출이익의 산정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불법 배출이익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제2조제1호·제2호의 경우:

해당 오염물질별 허가배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불법배출한 오염물질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과 연도별 과징금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제2조제3호의 경우: 불법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기물반입수수료

3. 제2조제4호(「하수도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제3조(위반부과금액의 산정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반 부과금액(이하 “위반부과금액”이라 한다)을 산정할 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산상황이나 그 밖에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삭 제>

가. 오수·분뇨의 경우: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개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량에 오염물질 1
킬로그램당 부과금액과 연
도별 과징금산정지수를 곱
하여 산출한 금액

나. 가축분뇨의 경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산
정한 요금

4. 제2조제4호 중 「하수도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분뇨의 처리수수료

<삭 제>

5. 제2조제5호의 경우: 불법배출
한 제한물질·금지물질에 대
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3
6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
한 금액

<삭 제>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불법배출한 오염물질량 산정방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위반
부과금액의 부과기준은 별표 1

법,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
금액 및 연도별 과징금산정지수
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불법배출한 오염물질량 산정
방법

가. 제2조제1호의 경우: 「대
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부터 제6항까지 또는 「환
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가목1)을 준용하여
산정함

나. 제2조제2호·제4호(「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는 제외한
다)의 경우: 「물환경보전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
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별표 8 제2호가목1)
을 준용하여 산정함

과 같다.

2.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
금액

가. 제2조제1호의 경우: 「대
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
표 4 또는 「환경오염시설
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라
목을 준용함

나. 제2조제2호·제4호(「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는 제외한
다)의 경우: 「물환경보전
법 시행령」 별표 14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
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라목을 준용
함

3. 연도별 과징금산정지수

가. 제2조제1호의 경우: 「대
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26조제1항 또는 「환경오
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
호나목을 준용함

나. 제2조제2호·제4호(「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는 제외하
다)의 경우: 「물환경보전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
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별표 8 제2호나목을
준용함

<신 설>

③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과징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
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 불법행위를 환경부에
최초로 신고하고 시정한 자로
서 관련 증거를 제공한 경우
에는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2. 환경부가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필요한 증거를 충
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환경부에 자진 신고하고 시정
한 자로서 조사가 끝날 때까
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
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신 설>

제4조(가중치의 산정방법)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불법배출이익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가중치”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1에 따른 위반 횟수별 부과계수와 지역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되, 가중치가 불법배출이익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배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경우에는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④ 제3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4조(과징금심의위원회) ① 과징금 부과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과징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환경부 소속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위원은 법률 또는 환경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와 4급 이상 환경부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6조(과징금의 부과통지) ① 과징금의 부과통지는 과징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불법배출오염물질량·부과금액·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7조(징수비용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8항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과징금(정화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과징금 중 정화비용으로 징수한 금액 전액을 그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정화비용으로 받은 금액 전액을 그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

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제7조(정화비용의 사용) ① 환경부장관은 정화비용으로 징수한 금액 전액을 그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 장관은 정화비용으로 징수한 금액을 오염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 소속기관에게 지급하여 그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과징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감시관의 직무) 환경감시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법위반행위 감시·단속
2. (생략)
3.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 지명 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4.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단속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시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법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통계관리

제13조(환경감시관의 직무) -----

1. 법 제15조의2제1항의 위반행위 감시·단속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5조의2제1항의 위반행위-----

4. 법 제15조의2제1항의 위반행위-----

5. ----- 법 제15조의2제1항의 위반행위-----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1. <u>법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u> 2. 3. (생략) 4. 법 제16조에 따른 <u>사업장의 출입·검사 등</u> 5.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정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u>받은</u> 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 ----- ----- -----. <u><삭 제></u> 2. 3. (현행과 같음) 4. ----- <u>행정처분을 위한 사업장</u>----- ----- 5. (현행과 같음) ② ----- ----- ----- ----- <u>받아야 하는</u> 자,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u>제조·수입·판매 또는 같은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u>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감사관 환경조사담당관	
연 락 처	(044) 201 - 6161